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(제 회)	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55호, 2024. 1. 30. 공포, 2024. 7. 31. 시행)됨에 따라,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단의 대행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조항 신설(안 제8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26. ~ 6. 5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. 다만,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.

1의3.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 ~ ④ (생략) ⑤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. 다만,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. <u><신설></u>	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. 다만,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.</u> <u>1의3.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</u>
<u><신설></u> 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